특 집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응방안

金 京 鍾*

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의의

1. NAFTA의 개념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즉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개국이 교역 및 상호투자의 확대를 위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려는 지역경제협정을 말한다. '92년 8월 12일 발표된 기본내용에 의하면 상품의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투자, 금융, 지적재산권 등 서비스부문까지 포함하고 있어 포괄하는 범위가 너무 넓다.

2. NAFTA의 배경과 목적

'91년 2월 5일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정상들이 NAFTA 추진의사를 공식 발표한 이후 '91년 6월부터 금년 8월까지 7차에 걸친 통상장관회담과 실무협상을 계속하여 '92년 8월 12일 3국이 동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공식 발표하였다.

EC통합이 5년간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여 볼때 NAFTA가 1년 6개월만에 적극 추진된 것은 북미 3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즉, 미국은 EC통합 및 일본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단일 북미시장의 구성, 멕시코의 노동력 활용을 통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강화 및 향후 범미주 및 태평양 경제통합 추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NAFTA 결성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멕시코는 1,000억달러 규모의 외채, 만성적 인플레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외지향적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멕시코 총교역량의 70%를 점유하는 미국시장의 자유로운 접근(Market Access)을 도모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동 협상에 참여하였다. 한편, 캐나다는 '89년 1월부터 발효된 미국·캐나다 FTA의 효과저하를 방지하고 미국 및 제3국의 멕시코 투자확대로 캐나다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NAFTA에 참여하였다.

3. 향후 절차

가. 협정문안의 작성 및 발효

금번 발표된 내용은 협정의 기본골격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문안은 실무협의를 통해 '92

* 商工部 通商協力課 行政事務官

년 9~10월경에 완성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94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다.

나. 협정안의 발효절차

협정안이 완성되면 각국은 의회의 비준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협정안이 합의되면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에 협정체결 및 발효에 대한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통보후 90일간 시행법안을 준비하여 대통령이 이를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의회는 시행법안의 내용에 대한 변경은 불가하고 가부만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90일 이내에 표결하게 된다. 미국 행정부는 9월 18일 의회에 NAFTA 체결의사를 통보하였으므로 '92년 12월 17일까지 의회에 협정문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발효시 즉시 시행여부

NAFTA가 발효되어도 모든 합의사항이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관세철폐의 경우 즉시, 5년내, 10년내, 15년 등 품목별로 철폐시한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바, 자동차 및 섬유의 관세는 10년 이내에, 일반 농수산물의 경우는 1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도록 되어 있다.

4. NAFTA와 경제 BLOC

가. 경제통합의 종류

경제통합이란 "경제적으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간의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제반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독자적인 광역시장권을 형성하고 통합체 전체의 후생증진을 목표로 하는 국제적 경제협력의 한 형태"이다. 이 경제통합의 종류로는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한 경제통합으로 분류된다.

자유무역협정은 각국의 무역장벽 제거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각국은 관세동맹과는 달리 협정국은 독자적인 관세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관세동맹은 가입국 상호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비가맹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공통의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공동시장은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자유이동까지 보장하는 형태인 반면에 경제동맹은 가맹국간의 공동경제정책까지 수행하는 것이며, 완전한 경제통합은 사회·정치적 통합까지 하는 것이다. NAFTA는 경제통합의 첫단계인 자유무역협정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나. GATT와의 관계

FTA는 역내국간에만 비관세조치가 적용되는 관계로 원칙적으로 GATT 제1조의 최혜국대우원칙(MFN)에 위배되나, 제24조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TA와의 관세동맹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GATT체제에서 인정되는 FTA 요건으로는 첫째 협정국간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에 대해 관세 및 기타 무역제한조치가 철폐될 것, 둘째 제3국이 협정체결 이전보다 더 높거나 더 제한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것, 세째 완전한 자유무역으로의 이행을 위한 경과규정으로 무역제한조치의 철폐계획 및 일정표를 구비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와같이 GATT에서 FTA가 인정되는 것은 역외국에 대한 무역제한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역내국에 대한 시장개방 효과를 유인시켜 전세계의 자유무역을 촉진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 EC통합과의 비교

EC통합은 노동 및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자유이동까지 보장되는 공동시장의 형태이며, NAFTA는 국별 무역장벽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자유무역지대의 형태이다. 따라서, NAFTA는 관세폐지나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EC통합은 관세, 비관세장벽은 철폐되었기 때문에 통화의 단일화, 세제개혁 등 경제정책의 통일 내지 사회적 문제의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라. APEC과의 비교

APEC은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정부간 협의

체로서 주요경제동향에 대한 의견교환, 역내협력 사업의 추진, 역내무역자유화 방안 논의 등을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APEC은 경제협력체가 아닌 각국간의 국제협의체라고 볼 수 있으며, 역내국간의 관세, 비관세장벽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NAFTA와는 기본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5. NAFTA 타결 발표에 대한 각국의 반응

가. 당사국의 반응

① 미국내 각계 반응

민주당에서는 NAFTA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즉, 클린턴 후보가 NAFTA를 원칙적으로 지지하나 근로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Gephardt 민주당 원내총무는 환경문제, 근로자문제 등에 있어 현 협정이 자신의 기대에 못미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였다.

한편 제조업자협회는 일단 NAFTA 타결을 지지하나, 최종판단은 '92년 10월 이사회 개최시까지 유보한다고 발표하였으며, 미국 전국노조 및 농업단체, 근로자단체 등은 대체로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② 캐나다

국민의 대다수가 미국·캐나다 FTA 효과에 대해 실망(30% 만 찬성)하고 있어, NAFTA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며, 야당인 신민주당과 노동당에서 NAFTA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각 지역중에서도 온타리오주 및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정부들은 미국·캐나다 FTA 및 NAFTA에 반대하고 있다.

③ 멕시코

일반적으로 대 멕시코 외국인 투자증대 및 대미 수출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NAFTA에 대하여 적극적인 환영을 보였다.

나. 역외국가의 입장

EC집행위원회는 GATT 규정을 존중하는 FTA 창설을 지지한다는 원칙적인 환영의사를 표명하였다. 영국은 원칙적으로 GATT정신에 일치하는 한 어떠한 FTA도 반대하지 않으며, NAFTA도 세계 자유무역에 공헌할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프랑스도 긍적적 평가를 하였다.

독일은 NAFTA가 세계 무역발전에 긍정적이며, 특히 UR협상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논평하였다. 일본의 경우, 자동차의 현지조달비율강화 등의 협정내용이 역외국에 대해 차별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GATT에 조속한 심사를 요청할 예정임을 정부입장으로 발표하는 등 경제블럭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II. NAFTA의 주요내용

1. 관 세

가. 3개국간의 관세

협정에서는 역내국간 북미산 제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대다수의 제품에 대한 관세는 5년 또는 10년내에 철폐하며, 특히 수입민감품목(주로 농산물임)인 경우 15년내에 철폐하게 되어 있다.

나.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은 관세 이외의 무역장벽으로 쿼터, 수입허가제 등 각종 수량제한, 수입에 대한 과징금 부여 등 무역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말하며, NAFTA는 이러한 비관세장벽을 원칙적으로 제거하기로 하였다. 다만, 농산물, 자동차, 에너지, 섬유류에 있어서는 당분간 쿼터 등 비관세장벽이 계속 적용된다.

다. 세관행정

NAFTA는 북미 3국의 원산지규정 관련요건 통일 등 북미 3국의 수출입시에 세관행정상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규정하였다.

라. 역외국 적용 여부

NAFTA 역내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만 적용하므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역외국가는 각국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북미 3국이 UR 협상의 결과 대외관세율을 인하할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2.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은 상품이 어느 나라에서 제조되었는가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NAFTA에서는 상품의 원산지가 NAFTA 3국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NAFTA는 역외국에서 생산된 부품 등을 사용하더라도 그 제품이 실질적으로 변형되어 관세분류표상 세번이 변경되게 되면 북미산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일부 품목에서는 예외적으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세번변경기준은 관세분류표상의 4단위 또는 6단위상의 변경이 이루어진 제품에 대해서 북미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부가가치기준은 관세분류표상의 변경 이외에도 일정기준 이상의 북미산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산자는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 둘중 어느 하나를 택할 수 있으나, 자동차의 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된다. 자동차제품(승용차, 경트럭, 엔진과 변속기)의 경우에는 비용의 62.5%를, 부품의 경우는 60%가 북미에서 생산·공급되어야 한다. 단, '94년부터 즉시 동 비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다. 즉, 자동차 및 엔진은 '94년 50%, '98년 56%, 2002년 62.5%, 자동차 부품은 '94년 50%, '98년 55%, 2002년 60%로 상향조정된다.

3. 투 자

가. NAFTA 투자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용요건의 완화

북미 3국간의 역내 자본과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제한을 완화 또는 자유화하였다.

북미 3국 기업인의 역내국 투자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 또한 수출실적, 국내부품 사용의무, 수출입 연계, 기술이전 등의 투자이행요건을 폐지하고, 투자금의 자유로운 본국송금을 보장하였다.

NAFTA의 혜택을 향유하는 NAFTA투자자는 NAFTA에서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기업이며, 동 기업을 소유하는 사람의 국적은 문제되지 않는다.

나. 예외부문 인정

멕시코의 경우 헌법상 외국기업의 진출을 금지하고 있는 에너지부문 등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한편, 대규모투자(협정 초기단계 2,500만달러 초과, 10년후에는 1억 5,000만달러)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되어 있다.

캐나다의 경우 외국인 투자심사시 현행 미국·캐나다 FTA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함으로써 '92년부터는 1억 5,000만달러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 역외국에 대한 혜택 불인정

NAFTA는 북미 3국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북미 3국이 아닌 경우에는 기존의 각국이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허용요건을 충족시켜야 투자가 가능하다. 각 개별국가는 자국에 대한 역외국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투자요건을 완화할 수는 있으며, 환경기준의 완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4. 개별산업에 대한 규정

가. 자동차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미국·캐나다 자동차협정에 의거 대부분 무관세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NAFTA는 멕시코와의 교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멕시코로부터의 승용차 수입에 대한 관세를 즉각 철폐하고, 경트럭에 대

해서는 관세의 10%를 즉시 인하하고 5년내 철폐하며, 기타 자동차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한다.

멕시코는 미국 및 캐나다로부터의 승용차 수입에 대해 즉시 관세율을 50% 수준으로 낮추고 10년 이내에 철폐하며, 경트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철폐(발효 즉시 관세율을 50% 수준으로 낮춤)하고, 기타 차량에 대해서는 10년 이내에 철폐한다.

캐나다는 멕시코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에 대해 멕시코의 관세인하계획과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

나. 섬 유

북미 3국은 섬유류에 대한 수입을 즉시 철폐하거나 10년 이내에 철폐하여야 한다. 미국의 쿼터 제한의 경우 점진적으로 철폐하며, 긴급 수입제한조치의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쿼터 적용이 금지되어 있다.

섬유에 대한 원산지규정은 대부분 북미에서 생산된 섬유사(yarn forward)를 사용해야 인정된다. 합성섬유사, 면직물 등의 경우에는 북미산 섬유원료(fiber forward)를 사용해야 원산지로 인정된다. 북미에서 생산되어도 원산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섬유사, 직물, 의류의 경우에도 관세쿼터에 의한 무관세를 부여한다. 그러나 실크, 린넨 등을 사용하는 품목은 북미 공급이 불충분하므로 북미에서 제조공정만 이루어져도 북미산으로 인정된다.

다. 농산물

미국과 멕시코간의 농산물 교역의 경우 모든 비관세장벽을 관세쿼터 또는 일반관세로 전환시키기로 하였다. 관세율은 협정 발효시 현행 관세 대상품목의 1/2을 무관세하고, 나머지 품목은 15년 이내에 철폐한다. 관세쿼터는 최근의 평균교역수준에서 초기 쿼터량을 부과하고 매년 3%씩 증가시키며, 적용 관세율은 15년 이내에 철폐한다.

캐나다와 멕시코간의 경우 낙농품, 가금류, 계란 및 설탕을 제외한 농산물에 대해서 10년 이내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한다. NAFTA는 북미 3국이 농산물의 수출보조금을 철폐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기타내용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해서 그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수준을 강화시켰다. 정부조달에서의 역내 상호국간의 상호규제를 완화시켜 상호 정부조달분야에 대한 공급을 확대시켰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의 자의적인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2국간 또는 3국간의 분쟁해결위를 설치하여 당사국이 관련법규를 명료하고 공정하게 운용할 수 있게 하였다. 표준 및 검사기준의 통일을 위해 공동노력하며, 이 규정이 무역장벽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밖에 서비스교역의 원칙(내국인대우), 환경보호 의무조항의 신설, 멕시코 금융시장의 개방, 3국간 트럭 및 버스운송에 대한 점진적 자유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NAFTA와 기존 FTA와의 차이점

가. 기존 FTA

○ 미국·이스라엘 FTA

〔경 위〕

'81년 이스라엘이 미국에 FTA를 비공식으로 제안한 후 '84년 1월부터 미국·이스라엘 FTA를 공식 추진하여 '85년 2월 26일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85년 9월 1일부터 동 협정이 발효되었다. 미국·이스라엘 FTA는 이스라엘의 안보능력 제고 및 중동의 평화유지를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내용〕

'95년까지 상품교역에서의 관세를 4단계에 걸쳐 철폐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수출의무, 국산품 구매의무 부과폐지, 정부조달의 자유화 등 비관세장벽도 철폐하였다. 서비스부문에서의 내국인대우, 지적소유권 등의 규정도 포함되었으며, 원산지비율은 35%로 규정하였다.

〔평 가〕

미국이 체결한 첫번째 FTA이나, 양국간 교역의 특수성 때문에 협정체결후에도 상호교역은 크게 증가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경쟁품목이 적어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 미국·캐나다 FTA

〔경 위〕

캐나다의 경우 UR무역협상이나 관세인하협정만으로는 산업의 경쟁력강화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미국도 상호 최대교역국간의 통합을 위한 미국·캐나다 FTA의 추진으로 '88년 1월 체결되어 '89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주요내용〕

양국간 모든 관세를 '89년 1월부터 10년 이내에 3단계에 걸쳐 철폐하고, 쿼터, 수출입 금지, 최저가격제 등 비관세장벽도 철폐하기로 하였다. 농수산물교역시 양국 모두 10년 이내에 모든 관세를 철폐하고, 수출보조금의 사용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서비스부문에서도 금융서비스는 내국인대우를 실시하고, 양국의 기업설립권, 상업권, 분쟁해결 등 서비스교역에서의 내국인대우에 합의하였다. 투자의 자유화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협력 등에 합의하는 한편, 미국·캐나다 원산지비율은 50%로 규정하였다.

〔평 가〕

미국·캐나다 FTA는 각종 합의사항의 이행기간이 10년이며, 아직 일부단계만 시행되고 있으므로 공식적인 평가는 유보하고 있다.

미국시장에서의 한국과 캐나다의 경쟁품목은 자동차, 전자, 철강 등 일부 이외에는 미미하며, 이들 부문에서도 FTA 이후 우리나라에 일방적인 부정적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NAFTA와의 비교

〔추진배경〕

NAFTA는 EC통합 및 일본의 경제권에 대응하기 위한 북미시장을 통합한 것으로, 특수한 관계의 미국·이스라엘 FTA와 공통적인 역사적·정치적 배경을 가진 국가간의 FTA인 미국·캐나다 FTA와는 성격이 다르다. 특히 NAFTA는 선진국인 캐나다, 미국과 개발도상국인 멕시코와의 상호 보완적인 FTA라는 점에서 향후 발전가능성이 중시된다.

〔협정내용〕

기본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는 포함되어 있으나 서비스분야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즉, 미국·이스라엘 FTA는 지적소유권, 투자관련규정, 정부조달 등만 포함되어 있으나, 미국·캐나다 FTA는 금융, 서비스부문까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산지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 FTA에 따른 역외국의 우회수출을 막으려는 조항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이스라엘 FTA에서는 35%, 미국·캐나다 FTA에서는 50%, NAFTA에서는 자동차는 62.5%, 섬유는 원산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평 가〕

미국·이스라엘 FTA는 미국이 체결한 첫번째 FTA이고, 미국·캐나다 FTA는 EC통합에 대비한 북미통합의 일환이었으나, 양 FTA는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NAFTA는 범미주지역 통합에 대비한 북미지역 통합으로, 우리나라와 경쟁품목이 비슷한 멕시코의 존재로 인하여 특정품목에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평가된다.

Ⅲ. NAFTA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FTA의 일반적 효과

가.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가맹국간의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될 경우 가맹국 상호간의 수입가

격이 하락하여 상품의 수출입이 증가된다. 이와 같이 상품의 수출입 증가로 교역이 확대되는 것을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ng Effect)라고 한다.

반면에 역내관세의 인하, 철폐로 종래에 비가맹국인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이 역내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어서 역외국의 무역이 감소되는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가 생기게 된다.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는 역내국과 역외국간의 상호 경쟁품의 대체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즉, 역내국간의 무역이 활성화되어 무역창출효과가 크게 되면 역외국에서의 수입이 줄어드는 무역전환효과도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역내국가의 경제성장이 촉진되어 수입수요가 증가되게 되면 무역창출효과는 커지지만 무역전환효과는 작게 나타난다.

나. 대규모 시장효과

FTA로 역내국의 시장규모가 확대되면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 생산비 인하로 인한 투자확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각국의 GNP, 소득수준, 경제성장이 촉진되게 된다.

다. 국제분업효과

FTA국가간의 비교우위에 의한 특화가 촉진되어, 생산요소의 효율적 사용에 의한 가맹국의 후생이 증대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비교열위산업에서의 실업률 증가에 따른 산업의 조정비용이 발생되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2. 우리 경제에 미치는 효과

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

① 긍정적인 효과

NAFTA는 전세계 GNP의 35%, 전세계 교역의 18%를 점유하는 시장권이므로 역내국간의 비교우위 특화, 규모의 경제실현 등으로 역내경제활성화가 전망된다. NAFTA 타결발표시 미국의 실질 GNP는 매년 0.5%씩 증가, 미국의 고용증가는 0.1~2.5% 증가하는 것으로 NAFTA의 효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멕시코와 캐나다의 GDP는 매년 0.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같이 미국 등 북미국가의 GDP증가에 따른 수입수요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기회를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② 부정적인 효과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멕시코와 미국시장에서 경쟁관계를 보이고 있는 품목(특히 컬러 TV, 신발, 직물 등)은 이번 NAFTA의 추진으로 대미 수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 미국의 자본 및 기술, 멕시코의 노동력이 효율적으로 결합되어 독립경제권의 형성이 강화될 경우 역외국과의 의존도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③ 기업의 노력이 중요

이와같이 수출에 따른 영향은 부정적인 면도 있으므로 우리 기업이 부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여하가 향후 NAFTA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

나. 현지투자기업에 미치는 효과

우리나라 기업중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업체는 향후 북미 3국을 대상으로 무역을 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선택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NAFTA의 실시로 북미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기준이 강화되는 품목, 즉 자동차와 섬유류의 경우에는 현지업체에 대한 혜택이 감소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의 경우 북미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재의 미국·캐나다 기준인 50%보다 높은 60~62.5%를 현지에서 부품으로 조달해야 하며, 섬유류의 경우는 북미산 원사나 북미산 원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산지기준이 강화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단독투자의 형식에서 부품 및 소재를 같이 투자하는 방식의 투자진출이나 현진 생산업체와의 업무제휴 등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품목에서는 원산지규정을 충

족시키지 않고 역외국 제품으로 관세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장기적 효과

미국의 멕시코에 대한 평균관세율은 3.4%에 불과하여 10년 이상의 이행기간을 거쳐 관세가 철폐되므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멕시코에 대한 수출경쟁력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know-how와 저렴한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NAFTA 제품의 경쟁력이 향상되면 북미시장뿐만 아니라 제3국시장에서도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Ⅳ. NAFTA에 대한 우리의 대응

1. 정부의 대응

가. NAFTA에 대한 기본입장

FTA는 GATT에서 인정되는 지역경제결합형태이므로 NAFTA 자체를 반대하기는 어려우며, 당사국간의 구체적인 협상과정에 한국이 개입할 여지도 적다. NAFTA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북미시장의 확대에 따른 수입수요의 증가라는 긍정적인 측면(무역창출효과)과 역내국간의 교역활성화로 인한 대외의존도의 축소라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무역전환효과)이 모두 있다. 또한 NAFTA는 본질적으로 지역경제의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역외국에 대해서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NAFTA는 미국·캐나다 FTA보다도 더 긴 과도기간(15년)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금부터 적극적이고 면밀하게 대처해 나갈 경우 FTA의 부정적인 효과는 극복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NAFTA를 새로운 시장의 확대라는 좋은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NAFT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제반 노력도 중요하겠으나, 이보다는 관련업계가 NAFTA에 따른 산업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상품이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게 되면 전세계 시장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 품질향상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나. 그동안의 대응현황

① NAFTA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91년 6월 NAFTA협상의 본격 추진으로 단일 북미시장 형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시장인 북미시장을 우리 경제에 대한 유리한 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대응이 즉각 필요하게 되었고, NAFTA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전산업을 포괄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관련부서, 민간업계, 연구기관 등 민·관의 공동대응이 요구되었다. 이에 상공부에서는 '91년 7월 NAFTA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내의 대응체제를 구축하였다.

북미자유무역협정 대책위원회는 상공부 제1차관보를 위원장으로 산업연구원, 대한무역진흥공사와 경제4단체(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소기협중앙회), 업종별 단체(전자공업진흥회, 기계공업진흥회, 자동차공업협회, 철강협회, 섬유산업연합회, 신발산업협회) 및 업계대표로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는 NAFTA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간의 업무조정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시행을 위해서 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실무대책반은 상공부 통상협력국장을 반장으로 하여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NAFTA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② NAFTA 정보센터의 운영

'91년 10월 KPTRA내에 NAFTA 정보센터를 설치하여 NAFTA관련 정보수집, 연구 및 전파기능을 수행토록 하였다.

그동안 NAFTA 정보센터의 대업계 활동실적

은 다음과 같다. '91년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간 일간 "해외시장"에 120여회의 NAFTA 관련기사를 게재하였으며, 월간 "북미통상정보지"의 발간(9회)을 통하여 관련정보를 신속히 전파하였다. 또한 NAFTA동향설명회('91. 6)를 7회(지방 4회) 개최하여 업계에 직접 NAFTA동향에 대한 홍보를 하였으며, "NAFTA 추진현황과 대응방안"('91. 12)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또한 NAFTA가 체결될 경우를 대비하여 멕시코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바, 멕시코 투자진출설명회('91. 9) 및 멕시코 진출상사협의회(2회 : '91. 8, '92.3)를 개최하여 관련업계에 멕시코에 대한 정보를 수시 제공해왔다. 아울러 멕시코지역에 대한 한국정용공단 설치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공단설치조사단('91. 8)을 파견한바 있으나, 별도의 공단설립은 경제성이 적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금번 NAFTA가 타결됨에 따라 향후 KOTRA에서는 멕시코 투자가이드 발간(3/4분기) 및 멕시코 투자환경설명회(4/4분기)를 개최하고, 지속적으로 NAFTA관련 동향을 입수·분석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재검토할 계획이며, 수시로 입수된 정보는 "북미통상정보지"(월간)와 "해외시장"(일간)을 통하여 계속 제공할 것이다.

③ 산업별 영향 분석활동 강화

한국무역협회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과 대응방안'('91), 그리고 산업연구원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92. 1)을 발간하여 관련단체 및 업계에 배포하였다. 그밖에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투자사절단을 지속적으로 파견하였다.

다. 향후 추진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NAFTA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인바,

첫째, 미국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며, 이를 위하여 미국 상무부와 상공부를 각각 양국간 기술협력을 위한 정부창구로 지정하고, KOTRA와 미국 상무부내 FCS(Foreign Commercial Services)간 업무협정 체결을 추진하며, 미국의 NTIS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와 한국의 산업기술정보원(KINITI)을 각각 양국간 산업·기술 정보교류창구로 지정하고, 양국 정부가 공동주관하는 기술박람회(Techno Fair)를 '93년 상반기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

둘째, 멕시코의 현지투자 확대를 위해서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고 '93년 2월중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세째, GATT/UR, APEC 등 다자 및 양자간 협의채널을 통해서 NAFTA가 경제 Bloc화되지 않도록 통상외교노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네째, 북미자유무역협정이 향후 중남미를 포함한 범미주 자유무역권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범미주권에 대한 투자진출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업계에 범미주지역의 투자환경에 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지원제도도 강화해나감으로써 기업들의 투자진출의욕을 고취시켜나갈 방침이다.

2. 관련기관의 활동

가. 대한무역진흥공사

NAFTA의 본격타결로 인하여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 전담반을 확대운영하여 상공부의 북미자유무역협정 대책위원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정보를 신속히 수집, 전파할 계획으로 있다. 또한 역내국 무역관(미국 : 6개, 캐나다 : 2개, 멕시코 : 1개)의 시장개척활동을 강화하여 대업계 마케팅을 지원하고, 현지 투자정보의 제공, 우리 업체의 현지 투자활동지원 등 현지 투자의 지원도 강화시킬 것이다. '92년 8월 이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정부, 유관기관, 업체와 NAFTA

관련업무에 대한 협조를 강화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과 대응방안"을 수립, 발간('92.9.30)할 예정이다. 또한 멕시코에 대한 투자정보를 집대성한 멕시코 투자가이드('92년 3/4)를 발간하고, NAFTA와 멕시코 투자환경('92년 4/4)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나. 산업연구원

'92년 2월 NAFTA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1차적으로 분석한 바가 있으나, NAFTA협정의 구체적 내용을 기초로 업종별 영향을 심층적으로 재분석중에 있다.

다. 무역협회

NAFTA의 세부내용이 발표될 경우 동 내용을 분석한 해설서를 발간하여 관련업계에 전파할 예정으로 있다.

3. 업계의 대응방안

가. NAFTA에 대한 기본인식

① 북미 3국간 교역의 활성화

NAFTA는 기본적으로 북미 3국간의 역내 교역활성화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즉, 역내 완제품 및 부품의 상호 생산·교역을 촉진하는 것이며, 제3국에서의 수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NAFTA는 제3국에서의 수입, 특히 부품을 수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북미산 제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고 부품을 한국에서 수입, 조달하여 생산하는 전략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② 멕시코시장에 대한 진출노력 강화

NAFTA의 실시로 멕시코는 미국시장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해지므로 향후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이며, 8천만이 넘는 멕시코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동 시장에 대한 진출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미국의 유통업자들도 멕시코에 대한 진출을 확대할 움직임이 있으며, 멕시코의 마킬라도라지역 소재 기업의 멕시코시장 진출은 2001년부터 자유로워진다. 또한 멕시코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따라 (멕시코는 GATT 정부조달협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제조회사를 둔 우리기업의 경우 멕시코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③ 북미 자회사에 의한 판매

미국에 자회사를 설치한 기업의 경우 향후 북미 3개국을 상대로 영업활동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미국에서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기업들은 기업의 최종소유권에 상관없이 투자, 생산, 판매 등 각 분야에서 NAFTA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된다.

나. 대멕시코 투자의 검토

① 멕시코의 유리한 점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여 여기에서 생산한 제품이 NAFTA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킬 경우 미국시장에 대한 지리적 인접성 및 NAFTA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게 되어 미국시장의 진출이 용이하여진다. 또한 멕시코의 임금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마킬라도라지역 진출시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② 멕시코의 불리한 점

멕시코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 언어 및 문화가 다르므로, 멕시코 투자진출시 공장운영상 스페인어 구사능력을 지닌 인력이 필요하다. 또한 멕시코가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다고는 하나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보다는 높으며 향후 10년 이내에 꾸준한 상승이 예상된다.

③ 검토시 고려사항

NAFTA 원산지규정을 만족시켜 미국에 수출하는 방안과 제3국에서의 부품수입을 통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방안의 비교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NAFTA 원산지규정 충족시 소요되는 각종 설비투자액을 감안한 원가계산과 미국에서의 관세부과에 따른 원가계산을 비교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 원산지규정인 60~62.5%까지 높일 것이냐 아니면 2.5%의 대미관세를 지불하느냐의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지역별로도 멕시코에 진출하여 생산하는 방안과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나 카리브해 연안국가 등의 중남미에 투자하는 방안도 비교되어야 한다. 멕시코의 임금수준은 CBI국가나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높기 때문이다.

다. 원산지규정 등 고려

① 원산지규정

NAFTA의 원산지기준은 매우 복잡하고 상품별로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특히 자동차 및 동부품, 섬유 및 전자제품의 경우 원산지규정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의 관세율이 매우 낮거나 제3국의 대미시장 진출에 대한 무역규제가 없는 경우에는 NAFTA 국가에 진출하여 엄격한 규정을 충족시키는 것보다는 제3국을 통한 미국시장 진출이 더 유리하게 된다.

② 관세환급

NAFTA 규정하에서 미국과 멕시코간의 관세환급이 7년후에 폐지되며, 미국·캐나다간의 관세환급은 1996년부터 철폐되기로 규정되어 있다. 멕시코의 경우 제3국산 부품을 수입함으로써 멕시코에 납부한 관세를 최종제품 생산후 미국에 수출시 납부한 관세액 이내에서 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이중관세를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NAFTA 발효와 동시에 무관세 대우를 받는 품목은 멕시코의 관세환급이 7년동안 계속 적용되므로 유리해지지만, 그렇지 않은 품목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된다.

③ GSP

멕시코는 미국시장에서의 GSP 수혜를 계속 받게 되며, 대부분의 GSP 수혜품목은 1994년부터 미국의 대멕시코 관세가 철폐된다. 그러나, GSP에 대한 원산지규정은 현재의 35% 부품조달기준에서 NAFTA 원산지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일부 품목의 경우 NAFTA 국가에서의 부품조달을 확대하여야만 GSP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라. 주요 업종별 대응방안

① 전기·전자제품

미국의 가전제품 관세율은 현재 4~5%로서 NAFTA 타결에 따라 멕시코산 제품은 관세철폐 상당액만큼의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가전회사(삼성전자, 금성사, 대우전자 등)는 브라운관, VTR, 가스레인지, 컴퓨터 등의 품목 외에 부품도 현지에서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멕시코에 투자한 가전사는 저렴한 인건비 등으로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므로, 대멕시코 투자는 미국·캐나다시장에 대한 수출증대 이외에 중남미국가에 대한 공급기지 역할도 강조되어야 한다.

② 섬유제품

국내 생산품은 고가제품 개발, 고유브랜드 개발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직수출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섬유부문의 멕시코 투자진출시 섬유 원사의 원산지규정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사, 직조, 봉제업체가 동반진출을 추진하거나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신 발

신발에 대한 NAFTA의 원산지규정은 멕시코에서 제3국 신발부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은 NAFTA 혜택을 받기 어렵게 규정되어 있다. 즉, 거의 모든 신발에 대한 현지 부품조달비율은 55%(순비용계산 기준)이며, 세번변경기준도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멕시코 진출에 의한 수출보다는 임금수준이 저렴한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한 수출이 더욱 유리하게 된다. 또한 향후 기술개발, 품질향상 노력을 통한 고가품의 직수출전략이 강화되어야 한다.

④ 자동차

미국의 승용차에 대한 관세율은 현재 2.5%로서 NAFTA가 타결됨에 따라 관세철폐로 인한

한국의 대미수출에는 그다지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향후 멕시코지역에 외국기업들이 부품공장이나 소형자동차공장을 집중건설할 경우 우리의 자동차부품에 대한 대미 수출은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동차 제품의 단순가공, 조립기술은 선진국수준이나, 금형제작 및 시험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열위에 놓여 있으므로 열위에 있는 분야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산업 전반에 걸쳐 노사관계 안정을 통한 품질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한편, 중·장기적 마케팅전략으로 멕시코에 생산공장을 건설하여 북미 및 중남미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연구개발부문은 미국에서 그리고 부품조달 및 조립은 멕시코에서 수행하는 등 북미지역을 국가별로 특화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⑤ 반도체

반도체의 경우 미국의 관세율이 5% 미만이므로 협정타결에 따른 역내국가간의 관세철폐 효과는 미미하여 우리 제품의 경쟁력은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의 반덤핑 제소위협이 상존하고, 미국기업이 멕시코지역에 집적회로부문의 투자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를 실시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⑥ 컴퓨터

컴퓨터의 경우 대미수출시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NAFTA로 인한 영향은 없으나, 장기적으로 멕시코의 저임금과 미국의 기술이 결합되어 완제품 생산·수출체제가 구축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표준화된 PC위주의 생산에서 원산지규정 강화에 대비한 주변기기 등 부품의 생산을 통한 수출제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4. 맺음말

NAFTA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으나 일단 우리나라를 비롯한 역외국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역외국가로부터 수입되던 제품이 역내국가로 바뀌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자유무역지대가 출범함으로써 전체적인 무역량이 증가하여 역외국가에 대한 수입수요도 증가하는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유무역지대가 완전히 실현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므로 단기적으로는 무역전환효과가 무역창출효과보다 더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수출구조가 비슷한 멕시코에 미국, 일본, EC 등 선진국의 투자가 집중됨으로써 미국시장을 비롯한 제3국 시장에서 수출경쟁이 심화되는 요인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업계에서도 그동안 NAFTA타결에 대비하여 그 나름대로 노력해왔고 동 협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주로 중·장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하기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역내무역촉진에 따른 무역전환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시장의 형성에 따른 무역창출효과가 더 클 것이기 때문에 NAFTA 타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 기업의 기술개발, 원가절감 등을 통한 경쟁력향상에 의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국제적 시각을 갖고 대처해 나간다면 오히려 우리의 시장규모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로서도 멕시코와의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을 조속히 체결하고, 아·태경제협력 각료회의(APEC) 등 다자채널을 활용한 통상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업종별 대응책 마련 등 업계와 긴밀한 협조 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